

[]외래 []입원 ([]퇴원[]중간) 한방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
환자등록번호		환자 성명		진료기간		야간(공휴일)진료		
				. . .부터 . . .까지		[] 야간 [] 공휴일		
진 료 과 목		병실		환자 구분		영수증 번호(연월-일련번호)		
항 목		급여		비급여		금액산정내역		
		일부 본인부담		전액 본인부담	선택 진료료	선택진료 료 외	⑦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+⑤)	
		본인부담금	공단부담금					
기본 항목	진 찰 료						⑧ 환자부담 총액 (①-⑥)+③+④+⑤	
	입 원 료	1인실						
		2·3인실						
		4인실이상						
	식대						⑨ 이미 납부한 금액	
	투약 및 조제료	행위료						
		약품비						
	시술 및 처치료						⑩ 납부할 금액 (⑧-⑨)	
	검 사 료							
	치료재료대						⑪ 납 부한 금액	카드
						현금영수증		
						현금		
						합계		
						납부하지 않은 금액 (⑩-⑪)		
선택 항목	한방물리요법료						현금영수증()	
	한약(첨약)						신분확인번호	
							현금영수증 승인번호	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						* 요양기관 임의활동공간		
65세 이상 등 정액								
합계		①	②	③	④			
상한액 초과금		⑥	-			선택진료 신청		[] 유 [] 무
요양기관 종류		[] 의원급·보건기관 [] 병원급 [] 종합병원 [] 상급종합병원						
사업자등록번호				상 호			전화번호	
사업장 소재지					대 표 자		[인]	
년 월 일								
항목별 설명						일반사항 안내		
1. 일부 본인부담: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, 요양기관 지역, 요양기관의 종별, 환자 자격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,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- 외래 본인부담률: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% ~ 6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~ 2500원, 0% ~ 15%) 등 - 입원 본인부담률: 2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% ~ 10%) 등 * 식대: 50%(의료급여는 20%) CT·MRI·PET: 외래 본인부담률(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(선택급여):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* 상급종합병원 입원료: 2인실 50%, 3인실 40%, 4인실 30% /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: 2인실 40%, 3인실 30% 2. 전액 본인부담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6 또는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(의료급여)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 3. 상한액 초과금: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(2015년부터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,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)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 * 전액본인부담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.						1. 이 계산서·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☎1644-2000, 홈페이지: www.hira.or.kr)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3. 계산서·영수증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(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)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"현금영수증(지출증빙)"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: http://현금영수증.kr)		
주(註):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, 야간(공휴일)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.								